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가단4928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3.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조남식

변론 종결 2019. 5. 8.

판결 선고 2019. 6.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985,001원 및 그중 119,932,000원에 대하여 2018.7. 1.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F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F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고, F은 이를 G에 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F이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G는 원고에 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5. 12. 24. G에 보험금 119,93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취득하는 구상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공시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은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 동안은 연9%, 그 다음 날부터 2018. 6.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는 연 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F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보태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985,001원(= 원고의 구상금 119,932,000원 + 이에 대한 2015. 12. 25.부터 2018.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5,053,001원) 및 그중 119,932,000원에 대한 2018.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E의 주장

피고 E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 피고 E은 사실혼 배우자인 H에게 다른 회사와 관련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H은 무단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연대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E의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E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 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었고, 그 전자문서의 연대보증약정 항목에 피고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설령, 위 전자문서가 피고 E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이상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신자인 원고는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피고 E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나아가 수신자인 원고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을 통해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985,001원 및 그중 119,932,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분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8. 10.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금영